

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안

(의안번호제916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5. 19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5. 19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5. 5. 25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정이유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가. 기금의 조성(안 제2조)

-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
나. 기금의 용도(안 제6조)

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
-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
-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
- 재난관련 장비 구입

다.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안 제10조)

-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장은 부군수,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과장, 간사는 재난관리담당
- 위원은 재난관련 실·과장으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 위원장이 임명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04. 3. 11 법률 제7188호로 공포됨에 따라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통합운용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조례 제2조에서 기금의 재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, 기금의 운용수입, 기타 잡수입으로 하였으며,
- 조례 제3조와 제4조, 제5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조례 제6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2항, 영재74조 제1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추가로
 - 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
 - .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
 - .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
 - . 재난관련 장비구입으로 규정하였으며,
- 조례 제7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된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를 실비로 지원토록 하였으며, 주택임차 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액의 70%이하로 하고,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토록 하였으며,
- 조례 제8조는 기금의 회계관리는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,
- 조례 제9조는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,
- 조례 제10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 운용토록 하였으며,
- 조례 제11조와 제12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조례 제13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마다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,
- 부칙에서 종전의 재해대책운용 기금조례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의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보고 종전 운영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.

이 조례는 기존 운용되어 오는 재난관리 기금을 통합운용코자 하므로
조례에 명시되어야 할 부분의 누락여부, 각 조항의 순서 등 심사후 가결
되어야 할 조례임을 검토보고 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5. 5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